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및 항공사 49개소 감독
- 전 사업장에서 위법 적발...근로시간 위반(49.0%), 금품체불(65.3%) 등 다수 확인
- 시정지시·사법조치와 컨설팅 병행으로 구조적 장시간 노동 개선 유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기획감독을 추진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25.7.28.~8.31.) 결과,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해서는 객실 승무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 ▲ 제조업 중심 45개소(교대제 30, 특별연장근로 반복 15) → 근로 기준 + 산업안전
- ▲ 항공사 4개소 → 객실 승무원의 근로조건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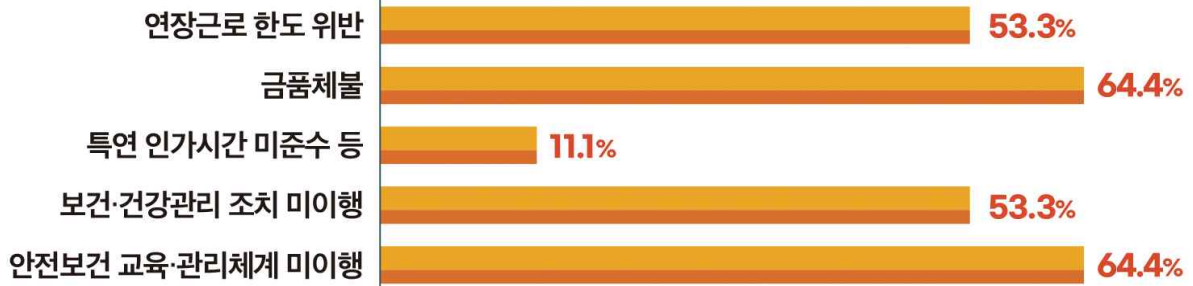
①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제조업 등 45개소)

감독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자 비율은 9.6%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약 22억 3천만원), ▲특별 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 확인됐다.

참고 1 | 주요 위법 사항 적발 현황(제조업 등 45개소 기준)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24개소)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미흡하게 나타났다.

* 야간 근무조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다수 적발

참고 2 | 주요 위반 사례

- ① 근로시간 위반** 업종 변경 과정(자동차 부품 제조 →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에서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생산이 불안정하여 총 159명의 노동자(사무직 133명, 생산직 26명)가 연장근로 한도 초과(총 38주, 평균 4.7시간 초과) (A사 / 에너지저장장치 제조, 329명)
- ②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약 4.7억원(연장 : 169명 약 1.6억, 야간 : 159명 약 2억, 휴일 : 165명 1.1억)과 임금 약 6.2억원 (167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약 1.5억원(165명) 등 총 약 12억원 미지급 (B사 / 표면처리 강재 제조, 224명)
- ③ 특연 인가시간 미준수** 고객사 주문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라인 추가 가동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24.5~6월) 중 생산직 노동자 24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을 미준수(총 8주, 평균 4.3시간 초과) (C사 / 식음료 제조, 543명)
- ④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23년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야간작업자 94명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 (D사 / 플라스틱제품 제조, 280명)
- 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년 특별안전보건교육 미 실시로 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인화성 액체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자 10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E사 / 의료용기기제조, 162명)
- ⑥ 주요 중대재해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 ⊙ (추락) 호보기 설비 상단 통로 끝단에 안전 난간 미설치 (F사 / 골판지제조, 78명), ⊙ (감전) 전기기계 기구 충전부 노출 (G사 / 금형제조, 46명), ⊙ (질식)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긴급 구조훈련 미실시 (H사 / 골판지제조, 78명)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1억 5백만원)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감독을 실시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집중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② 항공사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항공사 4개소)

감독 결과,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75.0%, 약 7억원),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하여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25.0%, 약 5억 5천만원),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

- ① **보장비행수당 미지급 등** 기간제 노동자(인턴 승무원)에게 숙련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 보장 비행수당 약 554백만원 미지급(235명), 일부 야간수당 약 1.6백만원 미지급(6명), 휴일근로수당 다음 연도 연초 일괄 보상 관행으로 휴일근로수당 약 75백만 미지급(135명), 퇴직급여 0.5백만원 미지급 등 총 약 6억 3천만원 미지급(A사)
- ② **야간수당 미지급**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브리핑 시간 등 제외)하여 야간수당 약 350백만원 미지급(997명), 퇴직급여 0.05백만원 미지급 등 총 약 3억 5천만원 미지급(B사)
- ③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등** ⓧ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C사, D사), ⓧ 임신 중 노동자 시간 외 근무 제한 위반(C사)

고용노동부는 항공사에 대해 미지급 금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그 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고,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했다.

③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정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위라벨+4.5 프로젝트)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규모·유형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원) → 장시간 노동·교대제 개편 기업 등 우대(월 10만원 가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5년 장시간 기획 감독 결과(주요 법 위반 사례 등 포함)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영덕 (044-202-7616) 최주환 (044-202-7530)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종길 (044-202-7612) 오성곤 (044-202-7533)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강승훈 (044-202-8914) 성은창 (044-202-8915)



《 기획 감독 개요 》

- ① (기간 / 방법) '25.10.16.~ / 산업안전과 통합감독 실시
- ② (대상) 제조업 중심 45개소(교대제 30, 특별연장근로 반복 15) + 항공사* 4개소
* (항공사 감독) 산업안전 통합감독 미실시,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 중점 점검
- ③ (중점항목) √ <근로 기준> ▲(공통) 근로시간 위반(근기법 §5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법 §36·43·56), ▲(제조업) ▲특연 인가시간 미준수 및 노동자의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법 §53④⑦), ▲(항공사) ▲휴가(법 §60) 및 휴게·휴일 관련 위반(법 §54, §55, §59②)
√ <산업안전> ▲특수건강진단 여부(산안법 §130),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법 §128조의2), ▲직무 스트레스 관리(규칙 §669), ▲기계·기구, 설비 위험 예방(법 §38), ▲안전보건교육 여부(법 §29)

1. 근로감독 결과

- (총괄) 감독 대상 49개소<100.0%>에서 총 261건(근로 기준 179건 + 산업안전 82건) 위반 사항 적발
- (적발 현황) ¹교대제 등 45개소<100.0%>(▲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약 22억 3천만원 미지급 29개소<64.4%>,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
- ²항공사 4개소<100.0%>(▲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 약 7억원<75.0%>,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하여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 약 5.5억원<25.0%>,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

■ 근로 기준 분야 법 위반 사항 적발 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대상	전체 법 위반		주요 법 위반		
		사업장	건수	연장근로 한도위반 (근 §53)	금품체불	특연관련 위반(근 §53③⑦)
전체	49	49(100.0)	261	24(49.0)	32(65.3)	5(10.2)
소계	45	45(100.0)	161	24(53.3)	29(64.4)	5(11.1)
교대제 등	30	30(100.0)	103	17(56.7)	21(70.0)	0 (-)
특연 반복	15	15(100.0)	58	7(46.7)	8(53.3)	5(33.3)
항공사	4	4(100.0)	18	-	3(75.0)	-

■ 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 적발 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대상	전체 법 위반		주요 법 위반		
		사업장	건수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교육·관리체계 미이행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전체	45	34(75.6)	82	24(53.3)	29(64.4)	5(11.1)
교대제 등	30	23(76.6)	57	16(53.3)	11(36.7)	2(6.7)
특연 반복	15	11(73.3)	25	7(46.7)	7(46.7)	1(6.7)

2. 주요 법 위반 사례

1. 교대제 등 + 특연 반복 사업장

< 근로 기준 분야 >

- ① (연장근로 한도 위반) 45개소 중 24개소(53.3%)에서 위반 적발

↳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자 비율은 9.6%

주요 위반 사례

① A사/에너지저장장치 제조, 329명 업종 변경 과정(자동차 부품 제조 →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에서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생산이 불안정하여 총 159명의 노동자(사무직 133명, 생산직 26명)가 연장근로 한도 초과(총 38주, 평균 4.7시간 초과)

② B사/강관 제조 등, 387명 해외 등 불특정한 납기 일정 등의 사유로 총 197명의 노동자(생산직 100명, 사무직 97명)가 연장근로 한도 초과(총 37주, 평균 12.5시간 초과)

- ② (금품 체불) 45개소 중 29개소(64.4%)에서 위반 적발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총 약 22억 3천만원 미지급

↳ (미지급 사유) 통상임금 오산정, 경기 악화 영향 미지급, 고정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

주요 위반 사례

① A사/표면처리 강재 제조, 224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약 4.7억원(연장: 169명 약 1.6억, 야간: 159명 약 2억, 휴일: 165명 1.1억)과 임금 약 6.2억원(167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약 1.5억원(165명) 등 총 약 12억원 미지급

② B사/자동차부품 제조, 95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약 2.4억원(연장: 78명 약 98백만원, 야간: 77명 약 47백만원, 휴일: 78명 95백만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약 9백만원(63명), 퇴직금 약 5백만원(7명) 등 총 약 2.5억원 미지급

③ (특연 관련 위반) 45개소 중 5개소(11.1%)에서 인가시간 미준수 등 위반 적발

주요 위반 사례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인가 시간 미준수

① A사 / 식음료 제조, 543명 고객사 주문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라인 추가 가동으로 특별 연장근로 인가 기간('24.5~6월) 중 생산직 노동자 24명이 특별연장 근로 시간을 미준수 (총 8주, 평균 4.3시간 초과)

② B사 / 자동차부품제조, 316명 납품량 증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24.11~'25.4월) 중 생산직 노동자 12명이 특별연장 근로 시간을 미준수(총 9주, 평균 4.9시간 초과)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미이행 등

① A사 / 합성고무 제조, 208명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24.7~9월) 시작 전 노동자에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89명), 인가 기간 중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총 19명에게 미부여

② B사 / 낙농제품 제조, 237명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25.4월) 시작 전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음(10명)

④ (기타) 근로조건 미명시 22개소, 취업규칙 미작성(신고) 16개소 등

- * ▲(근기법) 임금명세서 미비 8개소, 여성근로자 휴일 등 동의 누락 5개소, 계약서류 미보존 2개소, 연차휴가 미부여 1개소, ▲(고평법)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4개소, ▲(근참법) 노사협의회 미개최 1개소 등

< 산업안전 분야 >

① (보건 및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특수건강진단 등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등 32건 ⇨ 과태료 약 30,560,000원 부과 및 개선권고

①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12개소에서 야간노동자 등 165명에 대해 미실시(13건) ⇨ 과태료 20,960,000원 부과 * 법 제130조 ①·②

주요 위반 사례

① A사 / 플라스틱제품 제조, 280명 '23년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야간작업자 94명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

② B사 / 육상운송, 259명 검진기관 예약인원 미달로 출장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5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②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6개소에서 휴식·식수 설비 미구비, 담당자 미지정 등 ⇨ 과태료 6,240,000원 부과 * 법 제128조의2 ②

주요 위반 사례

A사 / 식료품 제조, 168명 의자 등 휴식 비품 및 식수 설비 미구비, 휴게시설 표지 미부착, 휴게 시설 담당자 미지정 등 사실상 휴게시설로서의 기능 부재

B사 / 자동차부품 제조, 95명 환기가 불가능하고, 물품 보관 등 사실상 창고 목적으로 활용

- ③ (건강진단 미 실시) 6개소에서 42명에 대해 일반건강진단 미 실시
⇒ 과태료 3,360,000원 부과 * 법 제129조 ①

주요 위반 사례

A사 / 스포츠용품 제조, 80명 건강진단 여부 등 관리 소홀로 '22~'24년 총 18명 일반건강진단 미 실시 등

- ④ (야간작업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흡) 8개소에서 뇌혈관·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미시행 ⇒ 개선권고
- ②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특별안전보건·정기 교육 등 미 실시, 보건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보위 미개최 등 23건 ⇒ 과태료 51,640,000원 부과
- ①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11개소에서 특별·채용시·정기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등 위반 ⇒ 과태료 16,480,000원 부과 * 법 제29조

주요 위반 사례

A사 / 식료품 제조, 168명 22명에 대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일지 상 교육시간은 법상 기준인 8시간으로 기재한 후 실제 교육은 1시간만 실시

B사 / 의류용기기제조, 162명 '25년 특별안전보건교육 미 실시로 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인화성 액체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자 10명 특별안전 보건교육 미 실시

- ②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 9개소에서 전담 보건 및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등 ⇒ 과태료 35,160,000원 부과

주요 위반 사례

A사 / 플라스틱제품 제조, 280명 근로자수는 280명이나, 사업장 내 별도 설립한 000000사 (120명)와 실질적 1개 사업장인바,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나 미선임

B사 / 낙농제품제조, 543명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함에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미지정

- ③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추락, 감전, 질식 등 주요 중대재해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총 6건(3개소) ⇨ 즉시 범죄인지

주요 위반 사례

① 추락(2건)

A사/골판지제조, 78명 호보기 설비 상단 통로 끝단에 안전난간 미설치(규칙 §43)

B사/치과기기제조, 118명 계단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 미설치(규칙 §13)

② 감전(3건)

A사/금형제조, 46명 전기기계 기구 충전부 노출(규칙 §301), 이동식 콘센트 접지 단전 및 접지선 끊어짐(규칙 §302), 이동 전선 절연 피복 손상으로 충전부 노출(규칙 §313)

③ 질식(1건)

A사/골판지제조, 78명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긴급 구조훈련 미 실시(규칙 §640)

- ④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및 경고 미부착,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등 20건 ⇨ 과태료 23,440,000원 부과

2. 항공사

- ① (금품체불) 4개소 중 3개소(75.5%)에서 위반 적발 → 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총 약 13억 4천만원 미지급

주요 위반 사례

① A사 기간제 노동자(인턴 승무원)에게 숙련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 보장비행수당 약 554백만원 미지급(235명), 일부 야간수당 약 1.6백만원 미지급(6명), 휴일근로수당 다음 연도 연초 일괄 보상 관행으로 휴일근로수당 약 75백만 미지급(135명), 퇴직급여 0.5백만원 미지급 등 총 약 6억 3천만원 미지급

② B사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브리핑 시간 등 제외)하여 야간수당 약 350백만원 미지급(997명), 퇴직급여 0.05백만원 미지급 등 총 약 3억 5천만원 미지급

③ C사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브리핑 시간 등 제외)하여 야간수당 약 358백만원 미지급(867명)

- ② (그 외 위반)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근기법 §71) 2개소, 임신 중 노동자 시간 외 근무 제한 위반(근기법 §74) 1개소 등

* ▲(근기법) 임금명세서 미비 1개소, 여성노동자 휴일 등 동의 누락 1개소, 취업규칙 미변경 2개소 등, ▲(근퇴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최소 적립금 부족분(약 33억원) 미해소 1개소, ▲(기간제법) 기간제 차별 규정(2시간 지각 시 결근 등) 1개소

- ③ (연차휴가 관련)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의 제도적 정비 및 명문화 필요(4개소) → '개선 권고*' 조치

*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운영, 노동자의 사전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 → 시기 변경권 행사 요건 및 절차를 명문화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